

약관 사후보고 (개정) (신구)조문 대비표

구분 (약관(상품)명)	변경 전 ¹⁾	변경 후 ²⁾	(개정)사유 ³⁾
시설대여(리스)약관	<p>제13조 (조세공과금) ③ 본 계약 및 보증서, 담보서류 기타 관련 계약에 따른 일체의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, 다른 청구나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, 모든 지급금은 현재 및 장래의 세금, 공과금, 수수료, 유보금 등을 이유로 한 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.</p>	<p>제3항 삭제</p>	<p>변경명령에 따른 금융약관의 제·개정</p>

1) 변경 전 약관 문구기재 또는 변경 전 문구 캡처 후 개정되는 부분을 박스체크하는 형태로 개정부분 표시

2) 변경 전 부분 대비 개정되는 부분을 빨간색 또는 박스로 구분하여 표시

3) 제·개정 신고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개정사유를 기재하며 카드 상품설명서의 경우, 개정되는 부분의 위치(페이지 등)을 추가기재